

91가학 32923 손해배상

원 고 노 무 현 외1

피 고 조선일보사 외2

위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0000049

1. 원고 노무현의 명예에 관하여

1) 원고 노무현은 명예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막상 명예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고 꼬집어 말하자면 막연하기도 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각도에서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 원고 노무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원고 노무현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부터 여러차례 보도에 오르내렸다. 특히 88년 국회 청문회 이후에는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신문방송은 물론 잡지에 까지 매우 빈번하게 보도 되었다. 개인의 보도는 그에대한 평가를 좋게 할 만한 것도 있고 나쁘게 할 만한 것도 있으며 같은 일에 대하여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나 여러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종합적인 또는 대체적인” 인상은 긍정적이었던 것 같다.

이런 총체적 인상의 기초를 이루는 구체적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모두 좋은것 만은 아닌것 같다. 급진적이다. 가변다. 주장이 너무 강하다. 지나치게 인기를 의식한다. 라는 부정적 평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평가가 긍정적이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상당한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몇가지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그것은 원고 노무현의 명예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그것은 원고로서도 무엇이래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고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득이 이것은 소송자료에 나타난 평가들을 인용하여 보자.

소송의 원인이 된 주간조선 기사 중에는

“노의원의 경우엔 더욱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노의원이 어느 국회의원들보다 국민의 사랑을 더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5공 청문회때 짙막하고 논리적인 질문으로 증인들을 몰아 붙이던 노의원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다. 또 그가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집안 형편 때문에 독학으로 사법 시험에 합격한 후 가진 사람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때문지 않은 정치인이고 근로자와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인줄 알았기에 국민은 그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던 것이다.

차세대 정치지도자와 관련된 여론조사때마다 그의 이름이 상원권에 오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원고로서는 과분한 평가이다. 일단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진위여부를 증거로 가리기도 쉬운 일이 아니므로 원고 노무현에 대한 국민 일반의 평이 좋은 편이라는 점. 그리고 그 평가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라는 점은 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한다.

그밖에도 피고 소송대리인의 91. 12. 19일자 준비서면 “2. 취재 경위”에 관한 기술 중 적어도 이것은 기사 취재 이전에는 피고 우중창이 원고 노무현을 “가난과 독학의 어려움을 딛고 사법 시험에 합격한 일지전적 인물로서 소위 노동자들의 편에서 행동과 양심을 함께하여 온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 내지 온몸을 바쳐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온 진보적 정치인”이라 논평하였고,

“이러한 기사들에 상당부분 힘 입어 일반 국민들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부상될 수 있는 인물 중 한명으로 인식 되기에 이르렀다.”는 부분도 그 논리구조가 너무 단순하고 표현이 과장되어 있는 점이 있지만 역시 원고에 대한 세인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유용할듯 하고,

을 제 3호종의 1. 2., 을제 4호종의 1. 2.(각 주간조선 표지와 기사)의 내용 또한 원고 노무현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다.

3) 원고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

위와같은 평가에 대하여 원고 노무현은 과분할 뿐만아니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공인의 신분으로 다수 국민의 주시를 받고 있으므로 부담이라 하여 이를 거부할 수도 없거니와, 이러한 평가를 잘 감당하기만 하면 대단히 유익한 정치적 자산이라 생각하여 노력과 절제로써 이를 감당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와같은 평가를 떠나서 그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소신에 따라, 그리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동안 이러한 평가요소에 관한 한 이렇다 할 과오를 범한 일은 없다고 자부한다.

급진적이다. 과격하다. 고집이 세고 주장이 너무 강하다. 인기를 의식한다. 라는 부정적 평가 또한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수양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점에 너무 강한 집념을 가지고 타협을 좋아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오해로 보고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자산으로써 “정직, 성실, 깨끗함”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4) 이상이 원고가 보호 받고자 하는 객관적 명예와 주관적 명예 감정이다.

2. 기사가 원고 노무현의 명예에 끼친 영향

1) 구체적인 사실 하나 하나를 들어 따지기 전에 전체 기사가 전달하는 의미·내용과 인상부터 살펴보자. 그것이 줄거리이자 알맹이이기 때문이다.

2) 기사 내용은 줄거리로 보아

원고 노무현은 가난과 어려움을 독학으로 극복한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편에서 일하는 때묻지 않은 깨끗한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으나,

알고보니 인권변호사라는 명성은 선배의 권유에 못이겨 시국사건 한 두件 맡아 했을 뿐 그 뒤에는 시국사건은 돈이 되지 않는다고 그만두어 버렸고, 요트나 즐기고 고급 콘도미니엄을 가지고 호사를 즐겼으며, 그 자신과 형의 명의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노사분규에 개입하여 노·사 양쪽으로 부터 돈을 받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인증인격자이자 부정한 정치인 이라는 결론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물론 엄밀하게 문장하나 하나를 떼어서 보면 반드시 그런 의미를 전달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할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 글을 읽어 본 사람은 모두 위와같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실제 이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그와같은 내용으로 원고 노무현을 비난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 측 91. 12. 19일자 준비 서면중 2. 취재경위를 보면 “원고 1.의 변호사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실상이 종전에 신문, 방송 잡지등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와는 달리 상당부분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과 “표리 부동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확인하고 취재.보도 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이것은 기사가 원고 노무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임을 피고 스스로 자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침해의 불법성

1) 명예 훼손에 대한 인식

바로 앞에서 인용한 피고측 준비서면 “ 2. 취재경위” 부분은 기사의 목적이 바로 원고 노무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재평가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 이것은 기사가 원고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할 것임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부주의의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의 수준이다.

2) 허위의 기사이다.

피고들은 원고 노무현의 구 민주당 동료의원, 변호사시절의 동료 변호사등에 대한 취재와 원고 노무현과의 직접 대담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보도 하였다고 주장하다.

그런데 피고가 취재하였다는 동료의원, 동료변호사는 누구인가. 그들이 말이라고 인용된 어느 문구를 보아도 취재원 보호라는 미명으로 적정한 재판이라는 공익을 깔아 뭉개만한 공식적인 요청을 담고 있는 것은 없다.

어떻든 취재원을 내세워 법정에서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근거없는 조작이라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녹음테이프에 담긴 원고 노무현과의 대담 내용만이 기사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녹취내용 어디에서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가.

더우기 을 제 3호중의 1, 2, 같은 제 4호중의 1, 2.(각기 주간조선 표지와 내용)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자.

같은 피고가 보도한 두 기사의 내용이 이견 기사의 내용으로 변화하는데 녹취문의 어떤 내요이 근거가 되었는가.

한마디로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3) 피고들의 악의

피고들은 기자로서의 양심과 의무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취재하고 보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녹취문을 한번 보자. 어디에서 그렇게 추잡한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긁어 모았는가.

원고 노무현이 판사직을 사퇴한 후 형님의 장모가 법원에 찾아왔던 일, 이발소, 사우나 다닌 일, 경보형사와 만난다는 일, 요트에서 사진 찍은 일, 여자이야기, 형님의 병역이야기, 세탁기 산 이야기, 88세된 원고 어머니더러 사채놀이 하느냐는 질문에서 원고 노무현과 노건평의 재산에 관한 상세한 목록과 이동시기까지 어느것이나 한 기자의 취재 능력으로는 엄두 내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13代 선거때 나온 흑색유인물을 보았는가 싶었는데 녹취문을 보니 피고 우종창은 원고 노무현이 흑색유인물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는 보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의 질문내용은 상당부분 흑색유인물과 일치한다. 누구에게서 얻은 정보일까.

원고들의 재산목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 했을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원고 노무현의 상대후보 허삼수는 보안사 출신이다. 노무현에 대한 보안사 요원들의 사사로운 뒷조사를 통해 흑색유인물이 만들어 졌다.

피고 우종창은 허삼수의 고교후배이다.

주간조선 기사는 이번 3.23총선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들 사실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원고들이 증명할 방법은 없다.

이것은 기사 모두에 실린대로 조선일보의 인물평과 그에 대한 해명, 그에 이은 주간조선의 기

사 그리고 소 제기후 공당에 대한 오만 불손한 헐박 소위 말하는 꾀심죄에 걸린 것인가,
피고들의 약의는 추측 할 수 있을뿐 증명하기는 어렵다.

4. 사실을 왜곡한 방법

1) 전체적인 구조

이런 기사는 많은 부분 사실, 또는 실제로 있었던 풍문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일부 의미있는 사실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어떤 사실의 발생시기 또는 선후 관계를 바꾸거나 증
간중간 터부니 없는 사실, 근거없는 풍문과 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끼워넣고 부정적인 수식어를
적당히 붙이거나 암시적인 접속 문장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몇개의 중요한 사실들을 허위로 조
작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전체로서 허위의 의미 내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

2) 풍문을 빌리고 있으나 실제로 그런 풍문도 없었던 몇가지 사례

가) 정가의 분위기는 그러나 한마디로 의야해 하는 눈치다.

나) 당시 정가에 나돈 얘기는..... 과장돼 있다는 것이었다.

다) 노사분규 증재 과정에서 재미를 보았다는 말도 있었다.

3) 남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나 내용도 허위이고 누구의 말이라는 근거도 없는 사례

가)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부산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이류만 걸어 놓았지 변론에 적극 참
여하지 않았다.

나) 동료 변호사들이 농민의 아들에게다녔다는 것이다.

다) 변호사 겸업 의원들이 노의원에게 항상 궁금해 하는 부분은.... 노의원을 잘 아는 부산의
변호사들은 이전에 대해 워낙 이재에 밝은 사람이 돼서.... 고 입을 모은다.

4) 직접 허재 하였거나 원고에게 확인 한 것 처럼 표현된 부분중 사실도 허위이고 허재 근거도 없는 경우

가) 대전 지방법원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재산을 일구게 된다.

나) 8인승 짜리 크루저도 한척 건조했다.

다) 이중 어떤 부동산은 수십억원의 금지당권이 설정될 만큼 고가였다.(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

은 공동 담보의 경우이고, 더우기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들이다.)

라) 건평씨의 부인도 한때 수만평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것은 건평씨가 구입한 후 부인 명의로 이전 한것도 있다.

마) 건평씨의 재산은 수십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 13代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 총재로 부터 3억원의 지원을 약속 받았는데....

사) 인권단체에서도 수천만원을 겨두어 주었다.

아) 김영삼내 잡종지 1천 500평과살때 노의원의 돈이 건너 갔다.

자) 노사 분류 과정의 재미도 약간의 실체가 드러났다.

5) 악의적인 표현과 사실의 배치

가)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재산을 일구게 된다.

— 근거도 없거니와 이런 표현은 부정 공무원, 악덕 변호사, 부패 정치인으로 설정된 도식에 끼워 맞추기 위한 악의적인 조작이다.

나) 법복을 벗은 이유는 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였다. 본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 원고 노무현은 대담시에 법관직을 사임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 하였다.

피고 우중창이 쓴 종전기사를 보면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 노무현이 그렇게 말한 것은 기분이 나빴거나 구차하게 무슨 거창한 이유를 말하기 싫어서 였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 들이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동기는 다른 이유와 병렬적이거나 단순히 그 이유 하나만 해석 하면 된다.

그런데 글이 “실은...”이라는 표현을 붙여 지금까지 숨겼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 듯한 인상을 지어 냈으므로써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주로 민사사건이었다. 라는 표현과 그 이후의 등기 이야기,

— 돈을 벌기 위한 것과 민사사건을 주로 한 것과는 아무 인과 관계가 없다. 또 등기 사무도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한 것이라고 보아서도 안된다. 원고가 이렇게 인정한 일도 없다.

라) 등기 사무를 변호사들은 말지 않았다.

원고 노무현이 보통 변호사들 보다 탐욕스럽고 체면도 없이 굴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데
바이다. 실제로 다른 변호사들은 동기 사부를 했고,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를 않았
다.

마) 8인승짜리 크루저도 한척 건조

— 올림피아라는 8인승짜리 크루저도 한척 만들었으나 타 보지는 않았다.

— 사실은 8인승 크루저 올림피아를 만들 당시 10여명이 함께 만들기도 했고, 그때 원고 노
무현도 회원에 가입 하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다가 그뒤 돈도 주지 않고 일체 관
여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고 말했는데 기사는 마치 크루저 한척을 원고 단
독으로 만들어 놓고 타 보지는 않았다고 구차하게 변명하는 모습을 그려 놓고 있다.

바) 당시로선 고급에 속했던 콘도미니엄

— 85년도 450만원짜리 콘도 회원권 하나가 변호사 신분엔 왜 고급이라 표현했는지 모르겠
다.

사) 본인 스스로도 86년 부터 재산 증식이 멎었다고 했으나 그의 재산은 줄지 않고 늘
었다.

— 부동산 가격이 올라 늘었을뿐 내용이 불어난 것은 아니다. 대단지 누누히 설명했는데도
이유를 생략해 버리니 이상하게 들린다.

아) 그의 재산과 관련해 눈여겨 볼 부분은 그의 형 노건평의 재산이다.

— 원고 노무현이 부정하게 취재하여 형에게 관리를 맡겨 두고 있는 듯한 강한 암시를 풍긴
다.

자) 건평씨는 ... 가리지 않고 투자 했다.

— 악의적인 수식이다.

차) 건평씨의 재산 노의원의 투자.... 우애...건평씨의 부동산 매매에 노의원의 돈이 얼
마가 전네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 미묘한 연결과 건너간 돈이 확실치 않다는 표현으로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는 한편 독자의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도 악의적이고 건너간 돈의 액수는 명료히 밝

혀 주었음에도 끝이 확실치 않다고 표현하여 의혹을 유도한다.

카) 남은돈 6천만원으로 아파트 계약(소제목)

— 일부로 계약했다는 점을 뺐다.

타) 노의원은 변호사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데도 돈에 조물리는 구석을 보이지 않고 있다.

— 노사 양쪽으로 부터의 돈 이야기에 이어 놓음으로써 부정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파) 후원회 모임에서 한 말의 인용도 말의 본뜻과 달리 구린데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하) 노사분규 과정의 재미도 약간의 실체가 드러났다. 소문은... 노사 양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 노의원은 사용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 사실 앞에 전혀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배치함으로써 원고 노무현이 노사 양쪽으로 부터 돈을 받았음을 시인 한 것으로 기교를 부려 놓았다.

6) 전체의 배치와 구조

서두에 일부의 풍문과 있지도 않았던 풍문을 빌려 의혹과 흥미를 유도해 놓고는 한 국회의원의 말을 빌려 원고 노무현에 대한 일반의 평가가 사실이 아니라 풍문쪽이 사실일 것이라는 강한 암시를 준다. 노의원의 실제 모습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다면 이는 “정치인의 도덕성 차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노의원의 경우에는 더욱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도덕성의 문제와 충격적인 일”로 초점을 맞추어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긴장의 수준까지 끌어 올려 놓은 다음 원고 노무현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재확인시켜 놓고는 인권변호사로서의 명성은 터무니 없이 과장되어 있고, 오히려 변호사로서도 남달리 탐욕스러워서 채면조차 돌보지 않았고, 요트를 가지고 호화 사치를 즐겼으며 노동자들을 돕는답시고 노사분규에 개입하여 노사양쪽으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형과 결탁하여 부정한 재산을 불려가는 부도덕하고 악삭빠른 정치인, 그러면서도 깨끗한 척, 정직한 척, 양심적인 척 하는 이중인격자라는 이미지로 원고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내용과 구조를 갖추고 있다.

3. 중요부분에 대한 원고의 해명과 주장

1) 인권변론에 관련한 부분

소위 인권변론, 또는 인권변호사 라는 용어 또는 명칭이 가지는 의미의 적확성이나 평가에 대하여 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이나, 각종 보도 매체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품이나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일정한 의미는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노무현은 1981년 부산에서 선배 변호사의 권유로 세칭 부림사건이라는 시국사건의 변론에 참여한 이래 1987년 까지 부산 뿐만아니라 마산, 울산, 충무동지에서 일어난 학생, 노동사건등 이른바 시국사건의 변론에 거의 빠짐없이 주도적으로 관여 하였을 뿐만아니라 부산 공해문제 연구소 이사,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이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 집행위원장 등으로 재야 시민 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왔으며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86. 9월경 부터는 스스로 사건수업을 줄이기도 하였고, 그 결과 87년에는 마침내 구속되기도 하고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는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풍문을 빌어 “인권 변호사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과장돼 있다는 것이었다.” 라고 써 독자들에게 인권 변호사라는 명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암시를 준 다음

“..... 부림 사건때 처음 시국사건을 맡았다. 이때 노의원은 변호인으로써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선배 변호사가 노의원에게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노의원은 ‘돈도 되지 않는 사건을 내가 왜 말아야 하느냐’ 고 고사했다. 겨우 그의 마음을 달래 5인의 변호인 중 한사람으로 참여 시켰다. 재판이 끝난 뒤 그는 ‘시국 사건은 재미도 없고 끝나도 인사가 없다.’고 불평하면서는 말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돈이 되지 않는 사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85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재판때 두번째로 시국사건 변호인이 되었는데 이때도 이름만 걸어 놓았지 변론에 적극 참여 하지 않았다. 이 무렵 노의원은 요트에 푹 빠져 있었다.”라는 기사를 쓰고 같은 기사 앞머리에는 원고 노무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사를 개업하여 돈을 위하여 사건을

선별하고, 체면 깎이는 일까지 불구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뒤에는 요트이야기를 이어 놓았다.

그러나 변론과 관련된 위 기사내용은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고, 변호사 업무와 돈벌이에 관한 기술 또한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시국사건 변론과 요트 취미를 가졌던 시기 또한 다르다. 요트는 81년 부터 시작하였으나, 85년경부터 시국사건 변론과 시민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차츰 손을 떼게된 것인데 이를 “이 무렵”이라 표현하여 변론 활동과 같은 시기로 묶어 놓은 것도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기교이다.

2) 요트에 관한 부분

원고 노무현이 80년경 동아대학교 요트씨클 출신 청년들의 권유로 요트를 시작하여 82년 요트 동호인 클럽 회장을 맡기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요트는 척당 100만원 안팎의 2인승 스포츠 용으로 1척으로 2 -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 결코 호사스러운 놀이가 아니었고 그것도 시민운동이 본격화 된 85년 부터는 시간이 없어서 그만 두어 버렸다.

그후 86년경 소위 이 10여명의 회원을 모아 8인승 크루저를 한척 건조한다고 하기에 한 문 끼자고 말한 일은 있으나 그 뒤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척 시키지 않고 돈도 내지 않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무렵 노의원은 요트에 쪽 빠져 있었다.”라고 하여 원고 노무현이 요트를 하던 시기를 인권변론의 시기에 일치시켜 놓고 “동료 변호사들이 ‘농민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취미’라고 충고”하였다거나 “올림피아라는 8인승 크루저 1척”을 단독으로 건조한 것으로 기사화 해 놓고 있다.

그러나, 동료 변호사들이 원고 노무현에게 요트를 “농민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취미”라고 충고하거나 그밖에 요트를 못마땅하게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런 문구는 요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하여 피고들이 만들어 넣은 것이다.

8인승 크루저 한척은 단독으로 만든듯이 기술한 것도 악의의 왜곡이다.

요트를 하다가 인권변론이 본격화 되면서 시간이 없어서 요트를 그만 두었음에도 두가지 활동의 시기를 일치시켜 놓은 것도 인권변론 활동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한 악의적인 왜곡이다.

3) 선거때 남은 돈에 관하여

원고 노부현은 13代 국회의원 선거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총재로부터 2억원을 지원 받고 그밖에 친지들로 부터 수천만원을 지원받아 선거를 치르고 나니 약 1억원 안팎의 돈이 남았다. 그중 4천만원은 재야단체 사무실 보증금으로 1천만원은 민주 산악회 사무실 보증금으로 쓰고 남은돈 중 1천 만원은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무리하게 지원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그 이후의 정치비용으로 사용 하였다. 그 뒤 정치비용에 개인 돈을 적지 않게 썼으므로 아파트 계약금으로 쓴 1천만원도 결국 훨씬 넘게 내 정치를 위하여 내놓은 셈이다.

선거하고 남은 돈을 당연히 그 이후의 정치활동에 쓸 일이다. 그것을 개인의 치부에 쓰지않 않으면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원고 노부현은 그 이후 국회의원 생활중에도 세비를 가지고 가족 생활비에 충당하지도 않았다. 이는 오히려 지나친 일일 것이다. 그래서 돈 문제에 관한한 양심에 거리낄 일이 없다.

그런데 무심코 선거 치르고 남은돈 이야기를 하다가 남주고 남은돈에 대한 이야기에 미치니깐 무척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이 선거하고 남은 돈을 자기를 위한 정치활동이나 개인용도로 쓰지 않고 수천만원씩 재야단체에 기부한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니 나는 자랑할 만한 일을 했다 싶다.

기사는 “부산의 변호사들과 인권단체에서 몇천만원씩 거뒀주었다.”

“김영삼 총재로 부터 3억원의 지원을 약속받았는데...”등으로 쓰고 소제목으로 “남은돈 6천만원으로 아파트 계약”이라 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로 부터는 지원을 받은 일 없다. 김영삼씨로 부터는 결과로는 2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단 한푼도 사전에 지원을 약속받은 일은 없다. 그리고 소제목 내용은 기사 내용과도 다르게 되어 있다.

4) 노사분규 중재와 상당한 재미 부분

원고 노무현은 노사분규 과정에서 또는 조정하면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노·사 어느쪽으로 부터도 단 한푼의 돈도 받은 바 없다.

기사에 나온 2천만원 전도 노사분규 중재를 하고 난 4-5개월 뒤에 받은 것이고 그것도 진작 다른 곳에 기부 해 버렸다가 그 이후 다른 부탁이 들어 오기에 형님한테 돈을 얻어서 돌려 주었다. 당 중재와 동료의원이 중간에 끼인 일이라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한점. 자기 호주머니에 넣지만 않고 나름대로 공익적인 일에 쓰면 괜찮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은 잘못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재미”를 보거나 그것도 노사 쌍방으로 부터 돈을 받은 일도 없다.

그럼에도 기사는 “노사 분규 과정의 재미도 약간의 실체가 드러났다. 소문은 노의원이 노사분규를 조정하면서 노와 사 양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전에 대해 노의원은 사용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라고 씀으로써 쌍방으로부터 재미를 본것으로 왜곡하고 그에 이어서 노의원이 변호사를 중단했음에도 돈에 쪼들리지 않는다니 워낙 이재에 밝다느니 하는 등의 이야기를 이어 의혹을 증폭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다.

5) 부정한 재산에 관한 문제

원고 노무현은 단 한푼의 부정한 재산을 모은일이 없다. 더우기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단 한푼도 축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기사는 서두에서

“때묻지 않은 깨끗한 정치인..... 인줄 알았기에....”라고 제시하여 청렴성 문제를 제기한 다음,

“..... 대전지방 법원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재산을 일구게 된다.”

“법복을 벗은 이유는 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였다.”

“ 돈을 벌기 위해서 개업했기 때문에 주로 한 일은 민사사건”이었고,

인권변론도 “돈도 되지 않는 사건”이라 고사하고

그 뒤에도 돈이 되지 않는 사건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으며 요트나 즐기고 고급에 속하는 콘돌 소유하고 있다. 는 등의 사실을 나열하여 원고 노무현을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그려놓고,

“노의원의 말대로 라면 87년 7월 그의 재산은 40여평짜리 아파트 한채, 콘도 회원권 하나, 친구에게 투자한 1억 5천만원이 전부인 셈이다. 본인 스스로도 86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거의 중단했기 때문에 재산 증식이 멈췄다고 했으나 그 이후 그의 재산은 줄지 않고 늘었다.”라고 써 원고 노무현의 해명에 신빙성을 밝아 놓은 다음,

“노의원의 재산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부분은 그의 형 노건평씨의 재산이다.”라고 시작하여 노건평의 재산을 터무니 없이 불러 놓은 다음,

“형 건평씨의 부동산 투기에 노의원 상당액 지원하기도”라는 소제목을 뽑아 놓고 원고 노무현의 재산도 과대 계상해 놓고 선거자금 이야기, 노사 양쪽으로부터 재미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늘어 놓은 다음,

원고 노무현이 변호사 업무를 중단했음에도 쪼들리지 않는다. 워낙 이재에 밝은 사람이다. 원고 노무현이 자신의 재산과 관련한 소문이 번지자 후원회 모임에서 자신이 과대 포장 되어 있더라도 납득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눈등의 사실을 이어 붙여,

원고 노무현이 부정할 방법으로 돈을 모아 형으로 하여금 부동산 투자를 하게 하여 축재한 부정할 사람이라는 줄거리로 구성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왜곡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개업의 동기, 변호사로서의 처신, 인권변론, 요트등에 관한 이야기가 왜곡되어 있음을 이미 설명하였다.

콘도가 고급에 속한다는 부분은 원고로서는 동의 할 수 없으니 덮어두자.

노의원의 재산이 87년보다 불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일뿐 다른 변동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러 원인을 생략하고 재산이 불었다.라는 말을 대치시켜 원고 노무현의 해명을 거짓말로 부각시켰다.

원고 노무현과 노건평간의 거래 내역은 명백히 밝혀져 있다. 굳이 밝히려면 그것만 명료히 밝히면 충분할 것이다. 그럼에도 “눈여겨 볼 부분은 노건평의 재산”을 운하여 진상을 흐리게 하고 의혹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기사는 노건평의 재산에 관하여

창원에 수백평이 있다. 은행에 수십억원의 근저당, 부인도 한때 수만평의 부동산 소유 등은 전혀 근거없고, 결론으로써 노건평씨의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과장되어 있다.

이것은 기사의 취재당시 누차 확인된 것이다.

원고 노무현이 형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도 소상히 밝힌바 있다. 그것을 형의 부동산 투기를 지원한 것으로 보아야 할 지는 녹취문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나 원고 노무현으로서는 투기를 지원한다는 인식을 가져본 일이 없다.

원고 노무현의 재산에 관하여도 진영을 잡종지 1500평은 전혀 근거 없다. 그리고 진영읍 여러 리 땅 200평과 돈 2억 5000만원을 중복 계산해 놓고 있다.

이 부분은 89. 7월 원고 노무현이 부산 삼락동의 자동차 매매 상사를 팔아서 친구돈과 함께 돈 3억 6천만원을 노건평씨에게 빌려 주었다. 당시 노건평은 땅을 샀다가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땅이 팔리면 돌려 주기로 했는데 그 뒤 땅이 팔리지 않아 땅을 인수하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그 땅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라 이전도 되지 않을 뿐더러 원고 노무현이나 친구 선봉술이나 돈을 써야 살 형편이라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더우기 원고 노무현으로서는 생활비의 원천이 되는 돈이라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땅이 팔려야 돈을 받을 형편이고 언제 팔릴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 우선 형에게 생활비를 얻어 쓰기로 하고 땅이 팔리면 오른 땅값으로 받기로 하였다.

그렇게 되고 보니 친구몫이 80평, 원고 노무현 몫이 120평으로 계산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생활비는 생활비 대로 얻어쓰고 후일 돈은 땅값이 올랐을 경우 오른 땅값을 받기로 해 놓고 보니 녹음 테이프만 들어보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원고 노무현이 주었다는 돈과 원고 노건평이 받았다는 돈이 서로 일치하는 이상 돈과 땅을 중복계산할 만큼 혼동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만일 다소의 혼동이 있었다면 다시 물어 보고 쓸 일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선거자금과 남은돈의 용도, 노사분규 과정에서의 재미, 돈에 곤란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 이제에 밝다는 이야기등에 관하여는 앞에서 해명하였다.

마지막 후원회에서 원고 노무현이 한 이야기는 “재산과 관련한 소문이 번지자”한 것이 아니다. 원고 노무현은 매스컴의 위력때문에 일반에게 알려진 이미지가 지나치게 미화, 과장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 중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6) 상당한 재산에 관한 문제

원고의 재산을 여의도에 88년 1억 2500만원에 구입한 47평형 아파트 1채, 85년 450만원에 구입한 18평형 정아콘도 회원권 하나, 88년 2000만원에 아내가 매입한 대연동 대지 40평, 89년 형에게 빌려준 돈 2억 5000만원의 댓가로 받기로 한 진영소재 답 120평, 콩코드 승용차 1대, 트렁크 1대가 전부이다. 시세로 그동안 부동산 값이 올라서 8억원 정도는 될 듯 싶다.

적은 재산도 아니다. 그렇다고 세인의 화제꺼리가 될 만큼 엄청난 재산도 아니라 생각한다. 흔히들 돈안되는 사건을 많이 다루었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보니 돈이 없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거나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그런 일에 걸맞지 않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원고 노무현은 그점에 관하여 견해가 다르다.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 노동자를 도와주는 것이 부도덕 하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그래서 원고 노무현은 국회의원이 된 후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돈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변호사 할때 벌어들인 재산으로 먹고 살고 세비는 사생활에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강조해 왔고, 몇차례 재산을 소상히 밝히기도 했다.

연젠가 문화방송 인터뷰에서 콩코드 승용차가 사치스러운 것 아니냐고 물을때 나는 상위 중산층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내 활동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당당히 밝히기도 하였다.

6. 원고 노건평에 관하여

그가 10억원 채 못미치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중 몇억원의 재산을 팔고 사고 한 것이 부동산 투기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 재산의 형성과 운용과정에서 원고 노무현의 부정한 재산과 관계를 맺은 일은 없다. 그럼에도 기사는 그가 원고 노무현의 부정한 수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재산 규모도 불려놓고 있고, 아내의 명의까지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해 놓고 있다.

그의 재산을 공개할 공익은 없다. 더우기 사실을 과장, 왜곡한 것은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다.